

특정감사

# 음주운전 자진 신고에 대한 특정감사 처분요구서

2018. 12.

**한국문화예술위원회**

# 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 .....	1
II.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.....	2

# I. 감사실시 개요

---

## 1. 감사 배경 및 목적

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직원이 적발 사실을 감사부로 자진 신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.

## 2. 감사 범위 및 감사 중점 사항

이번 감사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한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행위의 경위 및 법원 판결문,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관계 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.

## 3. 감사 기간 및 인원

2018. 12. 24(월)부터 같은 해 12. 26(수)까지 감사인원 1명이 서면감사를 실시하였고, 그 후 감사부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8. 12. 27.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.

## II.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

---

### 특정감사 총괄<처분요구사항>

번호	제 목 (지적사항)	처분 요구사항	관계부서
1	직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(음주운전)	경징계(견책)	☆☆☆☆☆

#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

## 징 계 요 구

제 목 직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(음주운전)

관련 대상자 ☆☆☆☆☆ 과장 ◎◎◎

징 계 종 류 경징계(견책)

내 용

위 관련자는 0000. 00. 00부터 현재까지(2018. 12.)까지 ☆☆☆☆☆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.

위원회의 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, 직무를 불문하여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이로 인해 공직기강을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련자는 2018년 00월 00일 00시 00분경 혈중알콜농도 0.182%의 주취 상태에서, □□□에서부터 △△△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◇◇◇ 승용차를 운전하였으며, 경찰관의 음주운전단속에 의하여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4백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 받았다.

위 행위는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의 위반은 물론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 및 위원회 「직원복무규정」 제4조(의무수행) 조항을 위반하여 위원회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.

## 관련자 의견

위 직원은 위원회 직원으로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, 재판결과에 따라 범칙금 납부, 음주운전자 소양교육 등을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하였다.

## 조치할 사항

**[견책]**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(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) 및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제7조(공직자의 청렴의무), 위원회 직원복무규정 제4조(의무수행) 조항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위원회 「인사관리규정」 제44조(징계) 조항에 의거하여 경징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단, 관련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[별표 1의3]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오는 2019년 2월 1일 시행 예정인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내 [별표 제2호] ‘음주운전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표’에 준하여 ‘감봉’ 조치에 해당하나, 관련자가 적발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고, 음주운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「인사관리규정」 제48조(징계의 양정)에 따라 ‘견책’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